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75
----------	----

제출년월일 : 1999. 5. 2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0년인 21C를 주도하기 위한 평창군의 비전 제시 및 군정계획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군정과 지역의 발전 및 중요정책 수립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위원은 군정의 주요시책, 지역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군재정확충 및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안제2조)
- 나. 위원은 군정과 지역발전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관광·농축업·환경·산림·통상·마케팅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교수로 10명내외로 구성(안제3조)
-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안제4조)
- 라. 위원은 실과소장의 추천을 받아·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안제5조)
- 마. 위원은 과제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간부회의 또는 월례조회 때 발표(안제6조)
- 바. 위원이 발표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일비와 여비를, 과제연구를 한 경우에는 과제연구비를 지급(안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당초 예산에 회의비 4백만원 확보, 과제연구비 미확보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0년]인 21C를 주도하기 위한 평창군의 비전제시 및 군정계획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군정과 지역의 발전 및 중요정책수립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을 위촉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군정의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군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은 군정과 지역발전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관광·농축업·환경·산림·통상·마케팅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교수로 10명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해촉등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군수가 결원된 범위안에서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위원은 실과소장의 추천을 받아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군수는 선정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위원의 직무) ①군수는 제2조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과제연구를 용역할 수 있다.

②실·과·소장은 위원에게 개별자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과제연구를 용역받은 위원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간부회의 또는 월례조회등 모임시 연구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④위원은 과제연구를 위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고서 활용) 군수는 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①위원이 발표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이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제연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제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위 축 장

성 명 :

직 위 :

주 소 :

귀하를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축 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199 . . . 부터 199 . . . 까지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으로 위축합니다.

199 년 월 일

평 창 군 수